

헌법재판소의 졸속 재판을 탄핵합니다

- 강일원 주심 재판관의 재판전형을 고발한다 -

대통령 변호인단의 조원봉 변호사, 김평우 변호사 등은 2017. 2. 22. 변론기일에서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기피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상세한 기피신청 사유와 증거 제시도 받지 않고 단 10분 만에 소송지연 전술이라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아래의 기피신청이유를 보시고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여 주십시오. 누가 옳은지?

① 강일원 재판관은 재산권분쟁도 아닌 이 사건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당사자 처분권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단서는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탄핵사유가 대부분 형사범죄사건이므로 형사소송법정이 준거법이 되는 것은 사건의 속성에도 맞습니다. 그런데 강일원 재판관은 준용이지 적용이 아니라는 이상한 이유를 내세워 민법상의 재산권 분쟁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당사자 처분권주의를 적용하여 피청구인 변호인 중 1인에 불과한 이중환 변호사가 국회의 졸속처리를 다루지 않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의 위헌적인 졸속, 속임수 탄핵소추를 다룰 수 없다고 따라서 증거신청도 받아 줄 수 없다고 증거신청을 불허하고 사건 심리의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나라의 국운이 걸린 대통령 심판사건인데 어떻게 당사자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며, 그것도 피청구인과의 합의문서도 없이 순전히 이중환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강일원 재판관의 준비절차 지시를 잘 알겠다고 구두로 의사수행한 것을 가지고 마치 피청구인이 재판을 포기한 것이라고 확대해석한단

말입니까? 너무나, 국민을 앞보고, 우롱하는 독선적인 재판입니다. 이런 재판은 무효입니다.

②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의 졸속한 속임수 탄핵소추에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강일원 재판관은 법무부의 의견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는 자신을 대통령직에서 쫓아내는 국회의 졸속한 소추절차의 위헌성, 위법성을 다룰 수 없고 증거신청도 할 수 없다며, 김평우 변호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신청, 증인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이 나라 삼척동자도 다 아는 국회의 졸속한 속임수 탄핵소추를 법정에서 다룰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는 원천적인 변론권 봉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국회에 앞으로도 아무리 졸속한 탄핵소추를 해도 좋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③ 강일원 재판관은 직권증인신문이란 이름 아래 국회대리인처럼 편파적인 증인신문을 계속 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실행된 증인신문의 동영상상을 통해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재판관으로서 한 신문문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피청구인 측 증인, 특히 정동춘 증인에 대하여 마치 청구인의 대리인이 하는 것처럼 증인과 증인의 내용을 탄핵하고 있습니다. 신문문의 내용이나 방식도 재판관의 개인적인 사전지식을 기초로 하여 마치 청구인의 대리인처럼 반대신문을 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④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에게 새로운 탄핵소추장을 쓰도록 권유하며 내용을 상세히 고쳐 주었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공평하여야 하므로 청구인 측의 법률구성이 잘못되었으면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탄핵소추장 내용의 모호한 말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고 지적하는 것은 몰라도 법률구성이 애매모호하니 이렇게 고치라고 모범답안을 가르쳐 주는 것은 공정한 법관의 직무수행이나 직업윤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강일원 재판관은 소위 <쟁점정리>라는 이름아래 새로운 탄핵소추장 내용을 제시하여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아래 소추장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하고, 이 변경된 소추장 내용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여 불공정한, 편파적 재판전형을 하여 왔습니다.

⑤ 강일원 재판관은 법에 어긋나는 증거규칙을 규칙제정절차도 없이 만들었습니다

강일원 재판관은 지난 1월 17일 재판에서 "현재 동의되지 않은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라 하더라도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임회하여 확인한 조서는 증거로 채택한다."는 새로운 증거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진술과정이 전부 녹화된 것은 직접증거로 채택한다."는 새로운 증거법도 만들어냈습니다. 이 강일원 재판관의 새로운 증거규칙은 헌법의 전문증거 배제의 원리, 형사소송법의 극히 제한적인 전문증거 인정원칙에 위반되는 순전히 개인적인 사설 증거 규칙입니다.

법치와 애국모임 Fax. 02)522-3652 02-3429-0157
Cafe. <http://cafe.naver.com/savekorea450>